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5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16조(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	법 제66조 제2항제1호	100	150	200
나.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·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경우	법 제66조 제2항제2호	100	150	200
다. 법 제26조에 따른 시·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	법 제66조 제1항	500	700	1,000
라.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·방해 또	법 제66조 제2항제3호	100	150	200

는 기피한 경우 마. 법 제40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경우	법 제66조 제2항제4호			
1)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 경 제한을 위반한 경우		100	150	200
2) 출입·취사·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		50	70	100